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3가단5422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

담당변호사 서민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

담당변호사 유승관, 하정민

변 론 종 결 2024. 10. 10.

판 결 선 고 2024. 11. 7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9. 2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

10,137,251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(소관: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)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2. 1. 24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02347호로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1) 나. 원고는 2022. 2. 23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10047호로 C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(청구금액: 631,506,082원)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(이하 ‘이 사건 가압류 결정’이라 한다), 2022. 2. 24.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C은 2022. 9. 27.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‘채권최고액: 500,000,000원, 채무자: C, 근저당권자: 피고’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, 2022. 9. 29.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한편 위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. 4. 21. ‘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,988,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20.부터 2023. 4. 2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’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23. 5. 12. 확정되었다(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‘이 사건 판결’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4, 6호증, 을 6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해해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.

나. 판단

1) 관련 법리

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,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(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다77446 판결 참조).

2)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

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,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,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22. 2. 24.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2022. 9. 29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, ② 원고의 C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채권금액(청구금액)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(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은 631,506,082원으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의 액수를 초과한다),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성남

별지

1) 원고는 위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'574,872,685원(= 잔존
대여 원금149,699,996원 + 잔존 이자 425,172,689원) 및 잔존 대여 원금 149,699,996원에 대한
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이자'의 연대 지급을 구하였다.